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217

2022년 6월 21일
보건복지위원회

Ⅰ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

2. 회부일자 : 2022년 5월27일

3. 상정일자 :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2.6.13.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Ⅱ. 제안설명의 요지(복지정책실장 정수용)

1. 제안이유

○ 급속한 인구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부양·돌봄부담 가중 노인학대 현장 신속대응 및 효율적 예방 활동을 위해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 5에 의거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·운영 중에 있음.

○ 그 간 노인학대예방 관련하여 조사 및 판정, 상담, 피해자 보호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있어 질적 성장에 기여하였음.

○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재위탁(공모)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위탁사무명 :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
·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 5(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

·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0조의 7(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)

·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9조의 15(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)

·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8조 (수탁자 선정)

·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사무내용)

·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·「서울특별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

○ 위탁사무내용

-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, 현장조사
- 학대피해 노인 및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
-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
- 노인인식 개선교육, 노인의 권익보호 사업 등
- 피해노인 및 가족 등 관련자 지원
- 그 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○ 위탁시설 개요

- 소 재 지 :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(법인 소유건물)
- 시설규모 : 172.38㎡

○ 위탁유형 : 사무형 민간위탁[1)]

○ 위탁기간 : 5년 (2022.10.1.~2027.9.30.)

○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(공개모집)

○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535,313천원(2022년)

- 산출근거

· 인건비 :449,005천원, 운영비:26,808천원, 사업비: 59,500천원

○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한광모)

○ 추진의 필요성

·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예방을

1) 「2021년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」 p.10.
민간위탁 유형 : 사무형 위탁이란 서울시의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자기소유 또는 수탁기관 명의로 임차한 시설을 활용하여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.

주요기능으로 하는 기관으로

·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·보호·치료 등의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,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.

· 또한 노인복지법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설치할 수 있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. 2)

○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2022. 9.30.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'민간위탁 조례')는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 또는 재위탁하려는 경우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3)

〈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추진현황〉

수 탁 기 간	수 탁 자	선정방법
-1차:04.12.1.~07.12.31	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	공개모집
-2차:08.1.1.~10.12.31	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	재계약
-3차:11.1.1.~17.9.30	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	재계약
-4차:17.10.1.~22.9.30	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	재계약

---

2)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5(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·보호·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둔다. 〈개정 2015. 12. 29., 2020. 12. 29.〉
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 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

3)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3(의회동의 및 보고)
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〈개정 2021.3.25, 2021.12.30〉
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〈개정 2019. 3. 28, 2021.12.30〉

○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 제3항은 민간위탁의 비효율을 방지하고, 민간위탁의 효과성 평가, 위탁사무 운영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[4)]

○ 금번 복지정책실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9년 노인보호사업 기관평가에서 시설운영과 사업전반에 대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평가결과를 제출하였음.

0 ○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○
- 평가일시 : 2019.7.16.
- 평가기관 : 보건복지부
- 평가내용 : 노인보호사업 기관평가
- 평가결과 : 최우수【 총점 : 92.46 (배점 100.00)】
  - ▸ 기관운영영역 : 득점 11.59 (배점 12.80)
  - ▸ 사업운영영역 : 득점 52.63 (배점 57.20)
  - ▸ 회계평가영역 : 득점 28.23 (배점 30.00)

○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탁기간은 17년간 위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도·점검시 동종·유사 사항에 지적되고 있어 민간위탁 기관 선정시 시설의 관리·운영의 역량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〈최근 3년간 지도·점검 현황〉

일 시	지적사항	조치결과
2019 ('20.01.30)	○ 각 구청 및 복지시설에 대한 적극적 홍보 권고 ○ 방문객 및 이용자와의 소통을 위한 건의함 비치 권고	완료
2020 ('20.12.4)	○ 물품 구입 시 비교 견적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○ 직원 채용 시, 인사위원회를 포함한 공정한 채용방안 모색 필요 ○ 기관 홍보 강화	완료
2021 ('21.12.23)	○ 일부 종사자 호봉 산정 부적정 ○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증빙 서류 미비	조치 중

4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3(의회동의 및 보고)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〈개정 2019. 3. 28〉

○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업무의 특성상 24시간 신고 및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어 상담원의 처우 등 개선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○ 또한 수탁자 선정시 시설장의 전문성은 이용자의 복지수용에 맞춘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더욱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.

○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기관 협력구축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○ 따라서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의거 조사.검사.검정.관리업무 등 시민의권리.의무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보이며, 노인학대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.[5)]

○ 본 동의안은 위탁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각 시설의 설립목적과 역할에 따라 전문성, 공공서비스의 지속필요성, 예산절감, 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○ 다만, 복지정책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탁기관들의 지도·관리 미흡, 허점 또는 태만 사항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
---

5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 〈개정 2009. 7. 30., 2012. 12. 31., 2014. 5. 14.〉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Ⅴ. 토 론 요 지 : 「없음」

Ⅵ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

Ⅶ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
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3217

제출년월일 : 2022년 5월 25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급속한 인구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부양·돌봄부담 가중,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학대가 증가하는 바, 노인학대 현장 신속대응 및 효율적 예방 활동을 위해, 「노인복지법」 제 39조5에 의거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·운영 중에 있음.

나. 그 간 노인학대예방 관련하여 조사 및 판정, 상담, 피해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노인학대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있어 질적 성장에 기여하였음.

다.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재위탁(공모)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개요

○ 사 업 명 :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
○ 소 재 지 :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
○ 위탁기간 : 5년 (2022.10.1. ~ 2027.9.30.)
○ 소요예산 : 535,313천원

나. 주요위탁 내용

○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 접수, 현장조사

○ 학대피해 노인 및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

○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

○ 노인인식 개선교육, 노인의 권익보호 사업 등

○ 피해노인 및 가족 등 관련자 지원

○ 그 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경위

○ 추진근거

-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(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
-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7(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)
-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5(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)
- 서울시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
-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○ 추진경위

- '05.1.1. :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위·수탁 협약

※ 선정방법 : 공개모집 /수탁자 : (재)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

- '08.1.1. :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위·수탁 협약(재계약)
- '11.1.1. :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위·수탁 협약(재계약)
- '14.1.1. :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위·수탁 협약(재계약)
- '17.10.1. :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위·수탁 협약(재계약)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을 통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요구되며,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 필요.

마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(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등)

> 제39조의 5(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등)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·보호·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둔다.
>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

- 제3조(시장등의 책무)

> 제3조(시장등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노인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,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> ② 시장은 학대피해노인의 발견·보호·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,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·조사,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> ③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,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9조(사업비 등 지원)

> 제9조(사업비 등 지원)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○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>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1. 노인, 장애인, 여성, 정소년,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에산 편성 (535,313천원)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돌봄팀 성기원 (☎ 2133-7413)